

# 경기(심판)위원회 규정 (2015.1.13.)

## 제 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대한육상경기연맹(이하 “연맹”라 한다) 정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며, 그 명칭은 경기(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본 연맹 주최·주관 대회와 개최 계획 수립, 공정한 경기 운영으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심판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규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심판으로서의 역할, 임무,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진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 연맹 경기(심판)위원회에서 자격을 취득한 등록 심판원 대상으로 적용한다.

② 이 규정과 대한체육회 규정이 상이할 경우 상급단체(체육회)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경기대회의 사업계획에 관한 업무
2. 경기대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3. 경기규칙의 연구·해석 및 보급에 관한 업무
4. 기록의 공인 업무
5.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6. 심판의 권익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7. 심판양성 교육(심판 강습회 및 클린심판원 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8.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10. 기타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3인 이내

3. 위원 20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한체육회 규정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항, 제3항, 제4항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2. 동일 대학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3. 경기인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사무국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위원장이 추천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회장이 가급적 이사 중에서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연맹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본 연맹 및 육상경기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소집) ①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②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의안작성, 회의록작성보관, 회무보고 및 기타 회무를 수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과 회의결과를 사무국의 소정절차를 거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회장의 재가를 득함 또는 필요시 이사회 의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인이 제1항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피할 수 있다.

### 제3장 심판 등록 및 관리

제14조(심판등록 구분) ① 본 연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심판등급을 구분하며, 특성이나 국제심판분류에 따라 별도의 용어로 분류할 수 있다.

#### 1. 국제심판

- 1) ITO(국제기술임원)
- 2) ATO(대륙기술임원)
- 3) 경보국제심판
- 4) 기타

#### 2. 국내심판

- 1) NTO(국가기술임원)
- 2) 1종
- 3) 2종
- 4) 3종

제15조(심판등록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본 연맹 상별규정 등에 의하여 제명된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제16조(심판등록 및 활동) ①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자격을 취득한 후 본 연맹에서 정한 절차 및 대한체육회가 운영하는 심판등록관리시스템의 등록 절차에 따라 심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심판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한 자만이 당해 단체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심판은 본 연맹의 경기(심판)위원회 회의를 거쳐 심판등록 변경 절차에 따라 심판등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심판등록에 관한 사항)

- ① 본 연맹은 등록심판의 기본정보, 선수·지도자경력, 심판경력, 교육이수경력, 상별사항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및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또는 자료 요청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② 심판 활동 실적발급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 제4장 심판 양성 교육(심판강습회 및 클린심판 아카데미)

제18조(심판강습회 운영) ① 심판의 공정성 제고와 자질함양, 인성 교육을 통해 심판 부정, 비리를 일소하여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통합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심판강습회 운영은 본 연맹 주관으로 시행한다.
- ③ 등록된 심판은 각종육상경기대회에 심판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 ④ 대한체육회 클린심판 아카데미 교육이수 심판원에 대해서는 본 연맹 심판원 역할 분장 시,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④ 심판강습회 편성과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습회 과정은 별표와 같이 5개 영역 10개 과목을 기본으로 편성하되, 심판의 수준 및 교육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한다.

※ 별표 : 심판강습회 교육과정(강의시간 및 과목은 대한체육회와 협의하여 조정)

영역	과목명	배당시간	비고
심판운영 및 경기규칙	○ 트랙경기	3 ~	
	○ 도약 및 혼성경기	3 ~	
	○ 투척경기	3 ~	
	○ 경보경기	1 ~	
	○ 로드레이스	1 ~	
도핑	○ 반도핑 규정	1 ~	
스포츠 심리와 생리	○ 스포츠심리학	1 ~	
	○ 스포츠생리학	1 ~	
스포츠의 도덕적 이해	○ 개인 가치와 스포츠	2 ~	
	○ 스포츠의 도덕적 탐구	2 ~	
스포츠 윤리와 통합	○ 스포츠와 윤리	2 ~	
	○ 스포츠와 사회 통합	2 ~	
사회 정의와 판정	○ 심판 활동과 도덕	2 ~	
	○ 사회 정의와 심판 비리	2 ~	
건전한 경기 문화 정착	○ 공정한 경기 운영과 판정	2 ~	
	○ 배려와 존중	2 ~	
도덕적 주체로서 심판	○ 심판 활동의 자긍심	2 ~	
	○ 심판의 책임감	2 ~	
총 교육시간 수		34 이상	

2. 강사 구성은 영역별 전문가, 체육행정가, 체육학 전문가, 교육과정 전문가, 사회 저명인사, 체육계 인사, 심판 등으로 초빙한다.

3. 강습회에 참가 심판에 대하여 심판강습회 운영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선·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⑤ 강습회에 참가한 심판은 본 연맹의 운영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⑥ 본 연맹은 교육이수자에 대해 이수증 및 자격증을 발급 한다.

제19조(강습회 및 교육실시) ① 본 연맹은 매년 정기적으로 심판에 대한 강습회 계획을 수립·운영 한다.

② 강습회 내용은 집합교육, 보수교육, 심판활동과 도덕, 공정한 경기운영과 판정, 심판의 책임감 등 교양 강좌와 규약, 경기규칙, 판정의 이론, 실기 교육 등을 실시한다.

## 제5장 심판평가제

제20조(심판평가) ① 본 연맹은 심판에 대하여 각종대회를 통하여 평가를 한다.

② 본 연맹은 심판원 현황을 보관하고 당해 연도 경기진행에 참가한 심판에 대하여 급

종 별로 구분하여 본 연맹 경기(심판)위원회를 통해 심판고과를 관리하고 승급이나 배정 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본 연맹은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그 세칙에는 동료심판, 선수 및 지도자가 평가할 수 있는 다면평가를 반드시 포함한다.

## 제6장 심판배정

제21조(심판기피 및 제척) ① 본 연맹은 대회전에 배정된 심판을 공개하고 선수, 지도자 등이 심판 기피를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요청할 경우 본 연맹 경기(심판)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심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경기에 관한 심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의 친인척, 시·도 대항전의 경우 해당 시·도관계자는 그 경기에 심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심판배정) ① 본 연맹은 경기(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대회의 심판을 배정 하여야 한다.

② 대한체육회에서 주최하는 클린심판 아카데미 교육이수자 및 국가기술임원을 우선 배정한다.

제23조(심판판정) ① 심판은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은 경기 진행 중 경기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다.

③ 심판은 경기종료 후 공식 경기기록 등을 기록원과 확인하며, 공식양식에 따라 경기 결과를 작성하여 경기(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 연맹은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시 비디오 재 판독 및 최소 1개월 이상 영상보관의 의무를 대회요강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항의, 상소는 국제육상경기연맹 및 해당 본 연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4조(심판의 품위) ① 심판은 본 연맹에서 발급한 심판증 또는 AD카드 패용하여야 한다.

② 심판은 본 연맹에서 규정한 복장과 장비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심판은 필요에 따라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심판은 본연맹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심판은 오심 및 편파판정에 대하여 본 연맹 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문책) 받

을 수 있다.

⑥ 심판은 선수·지도자의 팀(단체 등) 입단, 계약 또는 기타 취직의 알선, 협조 등 심판으로서의 직분이나 직무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6장 상 별

제25조(심판의 상벌) ① 심판이 명백한 오심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언행을 할 경우 본 연맹 상벌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오심 누적 시 심판자격을 강등할 수 있으며, 오심 횟수에 따라 심판자격도 박탈할 수 있다.

제26조(심판의 포상) ① 심판 평가 및 교육 우수 심판에 대해서는 본 연맹에서 표창을 상신하며 심판 승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본 연맹에서는 우수 심판에 대해 국제기구 연수에 파견 할 수 있다.

## 제7장 심판 매뉴얼

제27조(심판매뉴얼) 대한체육회 심판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 한다. 단, 본 연맹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 부 칙(2015.1.13.)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